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 송재봉ㆍ이연희ㆍ김우영

이광희 · 황명선 · 김성환

이수진 · 임호선 · 김문수

김동아 · 민병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,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 시설을 말하는데,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 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, 유전공학, 신약 개발 등 응용 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 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.
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 을 두텁게 마련하는 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,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

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5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번			
219	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	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	2032. 12. 31.
	법」 제11조	기 사용허가등	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